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5.(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5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30
- 나. 발 의 자: 김희동 의원 외 6명
- 다. 발의일자: 2024년 2월 21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2. 제안이유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대 지원하여 관내 주택 화재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확대(안 제2조)
 - 수정: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
 - 신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
- 나.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노인복지법」 제26조, 제39조의9
- 3)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나. 협조부서: 안전관리과

다. 입법예고(2024. 2. 23. ~ 3. 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기존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변경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확대(안 제2조)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로 변경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 신설
-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수혜자 발굴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강서구 65세 이상 인구 및 치매환자 현황 -

(2024. 1월 기준)

	강서구 전체	65세 이상	치매환자
인구 수(명)	562,550(100%)	101,490(18.04%)	3,531(0.63%)

- ※ 강서구 65세 이상 세대 수: 약 5만8천 세대
- ※ 강서구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약 2만6천 세대

붙임1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편성액			집행액			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2021년도	124,940	74,940	50,000	105,215	74,940	30,275	19,725	0	19,725
2022년도	128,550	78,550	50,000	94,239	78,550	15,689	34,311	0	34,311
2023년도	129,105	79,105	50,000	114,450	79,105	35,345	14,655	0	14,655

☞ 2024년 예산액: 총 128,496천원(시비 78,496천원 / 구비 50,000천원)

□ 최근 3년간 사업지원 현황

	총지원 가구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기타 (구조물품)
2021년도	1,859가구	360가구	311가구	267가구	311가구	610가구
2022년도	1,775가구	360가구	320가구	265가구	350가구	480가구
2023년도	1,925가구	360가구	400가구	265가구	400가구	500가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 9(금지행위) ①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